

## 고 시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6-109호

##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32호(2005.11.03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고, 성동구고시 제2006-1호(2006.03.22)로 금호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되었으며, 성동구고시 제2008-37호(2008. 06. 12)로 사업시행인가 되고, 성동구고시 제2011-07호(2011.03.11)로 관리처분인가된 금호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(변경)을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, 동법 제4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내용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11월 24일  
성 동 구 청 장

1. 사업명칭: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사업구역위치: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200번지 일대 (58,348.20㎡)
3. 사업시행자
  - 가. 시행자: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박 철
  - 나. 주 소: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55, 3층(금호동2가 222-1)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6년 11월 24일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  - 가. 계획면적(필지수)의 변경

| 구 분  | 면 적(㎡)   |         |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| 기 정      | 증·감     | 변 경      |                 |
| 계획면적 | 58,244.3 | 증)103.9 | 58,348.2 | 지적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|
| 필지 수 | 550      | 감)543   | 7        |                 |

## 나. 토지용도변환(변경)

| 구 분  |              | 면 적(㎡)   |         |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| 기 정      | 증·감     | 변 경      |                 |
| 총 계  |              | 58,244.3 | 증)103.9 | 58,348.2 |                 |
| 택지   | 소계           | 47,303.9 | 증)0.3   | 47,304.2 |                 |
|      | 분양           | 45,156.0 | 증)0.3   | 45,156.3 | 분양,임대 및<br>상가포함 |
|      | 존치<br>(교회부지) | 2,147.9  | -       | 2,147.9  | 변경없음            |
| 공공시설 | 소계           | 10,940.4 | 증)103.6 | 11,044.0 |                 |
|      | 도로           | 3,879.4  | 증)103.6 | 3,893.3  |                 |
|      | 공원           | 7,061.0  | -       | 7,061.0  | 변경없음            |

## 다. 단순 권리변동 신고처리

| 권리변동<br>조합원 수 | 변동 원인 별 |    |    |      | 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|------|----|-----|
|               | 매매      | 상속 | 증여 | 협의취득 | 개명 |     |
| 165           | 146     | 5  | 11 | 1    | 2  |     |

## 6. 관계도서 : 생략

[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☎2286-6572) 및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2233-1255)에 비치]